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292
------------	------

2015년 9월 5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6월 28일, 이창섭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6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6년 9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창섭 의원)

가. 제안 이유

-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 관련 면허 및 헬멧을 착용은 물론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 없어 이용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용수단으로 정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 나. 주요골자

- 현재 도시내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속도차가 많이 나는 차도를 이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면허소지 및 헬멧 착용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날 경우에도 관련 보험이 없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을 별도 정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 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라. 이 송 처

- 국 회 : 국회의장
-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현재 법률상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경우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개선하고자 “개인형 이동교통수단”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용수단으로 구분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최근 세그웨이 및 투휠보드와 같은 전동휠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휴대 편리성과 가격의 대중화에 힘입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발전에 따른 가격 인하, 친환경 교통 정책 및 1인 가구 증가를 감안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참고 : 국내 2015년 전동휠 판매량 증가율<sup>1)</sup>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시장	-	-	-	5.3	7.2	4.8	6.2	7.6	22.0	21.1	25.8

-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이 모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sup>2)</sup>함에 따라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차도로만 이용해야 하는 상황임<sup>3)</sup>

1) “드론&전동휠 아웃도어 키덜트 제품이 뜬다”, 세계일보(2015.11.30.).

2)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1·2종 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83에 따르면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초·중 등학생들의 개인용 이동수단 운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는 등<sup>4)</sup> 현행 법률 체계가 개인용 이동수단의 실제사용 여건과 맞지 않는 상황임

- 한편 2015년 기준 전동휠 관련 사고 건수는 총 26건으로 전년도 2건에 비해 무려 13배나 증가하였으나 파악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개인용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관광지 전동휠 대여점 23곳 중 19곳(82.6%)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남<sup>5)</sup>
- 따라서, 동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구분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기술발달에 따른 도입된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개인이동교통수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도록 관련법에 조속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sup>6)</sup>

3)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생략

4)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5) 지우석,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경기개발연구원, 2016.5.18.)

6) 택시물류과-25676(2015.8.31.)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화된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과 도시내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형화, 경량화 등의 다양한 기술발전과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용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여전히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나 시속 20km의 속도로 자동차와 함께 차로를 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면허 및 헬멧을 착용해야만 운행가능하나 이를 알고 있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경우에도 관련 보험이 없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부 해외 도시들의 경우 속도제한을 전제로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을 Low Speed Vehicle(LSV·저속차량)로 별도 규정해 면허, 보험, 차량등록, 주행 방법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새롭게 대두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